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제2항의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를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의 경우”로 한다.

별표1(열사용기자재)의 보일러의 품목명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그 적용범위에 “제1조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별도 구분하여 추가한다

별표3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의 보일러 품목명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추가한다.

별표3의3(검사대상기기)의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그 적용범위에 “별표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를 별도 구분하여 추가한다.

별표3의5(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의 비고에 “7.별표3의3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3의6(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의 검사대상기기명에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그 대상범위에 “ 별표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를, 면제되는 검사에 “제조검사 및 운전성능검사”를 별도 구분하여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현 행

[별표1] 열사용기자재 (제1조의2 관련)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2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및 축열식 전기보일러는 제외한다.
	소형 온수보일러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
	축열식 전기보일러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인 것
	<신설>	<신설>
이하생략		

개 정(안)

[별표1] 열사용기자재 (제1조의2 관련)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현행과 같음
	소형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제1조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별표3의 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 · 시공범위 (제31조의5 관련)

구분	품목명	설치 · 시공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신설>	해당 기기의 설치 · 배관 및 세관
태양열 집열기	태양열 집열기	해당 기기의 설치 · 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해당 기기의 설치 · 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유리용융도가니가마 터널가마 도염식각가마 셔틀가마 회전가마 석회용선가마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금속요로	용선로 비철금속용융로 금속소둔로 철금속가열로 금속균열로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별표3의 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 · 시공범위(제31조의5관련)

구분	품목명	설치 · 시공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현행과 같음
태양열집열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압력용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요업요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금속요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별표3의 3] 검사대상기기 (제31조의6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신설>	<신설>
생략		

[별표3의 3] 검사대상기기 (제31조의6 관련)

구분	검사대상기기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현행과 같음
	소형온수보일러	현행과 같음
	캐스케이드 보일러	별표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별표3의 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개조검사		1. 보일러: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1. 보일러: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재사용검사		1. 보일러: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1. 보일러: 1년 2. 압력용기: 2년
	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1년 2. 철금속가열로: 2년

비고. 1. ~ 6. <생략>

7. < 신 설 >

[별표3의 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현행과 같음
개조검사		현행과 같음
설치장소 변경검사		현행과 같음
재사용검사		현행과 같음
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현행과 같음
	운전성능검사	현행과 같음

비고. 1. ~ 6. <현행과 같음>

7. 별표3의3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안)

[별표3의 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1. 강철제 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2. 주철제 보일러 3. 1종 관류보일러 4. 온수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 이하인 것	용접검사
	주철제 보일러	구조검사
	1.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 2. 전열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 보일러	설치검사
	1. 전열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미리미터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 것 나. 수두압(水頭壓)이 5미터 이하이며 안지름이 25미리미터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2.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유류·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 온수보일러	제조검사
<신설>	<신설>	<신설>
<이하생략>		

[별표3의 6] 검사의 면제대상 범위(제31조의13제1항제1호 관련)

검사대상 기기명	대상범위	면제되는 검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형 온수보일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캐스케이드 보일러	별표1에 따른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제조검사 및 운전성능검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